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채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2

조제3항제2호라목, 안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
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제9호
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
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
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
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안 제59
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
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66조 및 제67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신설)

1)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29. ~ 11. 28., 11. 22.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농업진흥지역 관리 강화 등)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을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농막”을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설치

제29조제7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농기자재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할 것
나. 제2항제1호, 제7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나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
분의 20 미만일 것

제45조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38조제1
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
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납부의무자”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로 한
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납부의무자”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로,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보증서등을 발
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이 제50조제5항에 따라 대지급금 등을 지
급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납입자”를 각각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협의해야 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3.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한다)가 해당 지역등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

4.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편입할 것

2.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다

만,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단계에서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단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4. 농지가 원형보전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방지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5.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법 제47조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에 부합할 것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에 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9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제67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2.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8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9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2.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시·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9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

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7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다목을 삭제

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신고 및”을 “신고,”로, “신고의 취소”를 “신고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의 취소”로 한다.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7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사무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	---------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	---------------	-----	-----	-----

별표 5 제2호라목(중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1호”를 “법 제64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중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2

호”를 “법 제64조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종전의 마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3호”를 “법 제64조제2항제4호”로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4조제2항제4호”를 “법 제64조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부칙 제4조: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9조까지): 2025년 1월 24일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

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이루어진 농지의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직농장·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별표 2의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2제1항 관련)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5.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6.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9.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1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1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2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

가시범지구

21.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22.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2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24.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2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 및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2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2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
2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
3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
3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
3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36.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37.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

- 3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40.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구역(농업진흥지역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해양박람회특구
- 4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4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 4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45.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 및 완충관리구역
-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47.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4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가 해당 종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9.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5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5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5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
- 5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5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56.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5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5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
59.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60.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6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 구역
62.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6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
6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6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
66.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6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68.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6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개발목적 또는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구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생략)	제2조(농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농막·간이저온저장고</u>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u>농막·농촌체류형 쉼터</u> ----- ----- -----
<u><신 설></u>	마.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u>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

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13조(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

서 제외되는 시·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

<삭 제>

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삭 제>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요지 중 비슷한 내용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삭 제>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
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
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의 작성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
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
의 작성 등) ①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④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6. (생 략)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신 설>

② ~ ⑥ (생 략)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 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설치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2. ~ 8. (생 략)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2. ~ 8. (현행과 같음)

9. -----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나. (현행과 같음)

9의2. 농기자재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할 것

나. 제2항제1호, 제7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나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10. (생 략)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 략)

②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②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3호까지-----

-----.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
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
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
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해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
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
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
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
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
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
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
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농지보전부
담금을 내야 하는 자-----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 농지보
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

----- 농지
보전부담금을 낸 자(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이 제50조제5항에 따라 대지급
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2의2. (생략)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②

1. (현행과 같음)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

-----.

-----.

2의2. (현행과 같음)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
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
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
복일로 한다.

③ (생 략)

<신 설>

--. -----

-----.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
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
한 성토

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
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
한 절토

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
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
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

<신 설>

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
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
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

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
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신 설>

4. 시정기간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 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협의해야 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3.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한다)가 해당 지역등에 추가

로 포함되는 경우

4.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
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
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지역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
는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한의 면적으로 편입할 것

2.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
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고려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단계에서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단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4. 농지가 원형보전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5. 지정 또는 결정하려는 지역등이 법 제47조에 따른 농지

<신 설>

<신 설>

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에 부합할 것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

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

<신 설>

립 등)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제67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기본계획
의 내용

2.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립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
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
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
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
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
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
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8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
인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자
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
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69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대
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변경하려는 실천계획
의 내용

2.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승인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 설>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9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

제7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2의2. (생략)

<신설>

제7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
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가 지역·지구 및 구역 등
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
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
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
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
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
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
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

3. · 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 · 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 · 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 · 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
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
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
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
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
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의 경우

6. (생 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 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나. (생 략)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
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

6.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
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
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
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의 경우

③ ~ ⑤ (생략)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의3. (생략)

<신설>

3.·4. (생략)

②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1.·1의2.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
지개량행위의 신고

3.·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u>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 용허가·<u>신고의 취소</u></u> 3. ~ 5. (생 략) ⑥ (생 략)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 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7. (생 략) ③ · ④ (생 략)	2. ----- -----<u>신고</u>, ----- -----<u>신고 및 농지개량행위 의 신고의 취소</u> 3.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 <u>지개량행위의 신고 사무</u>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6